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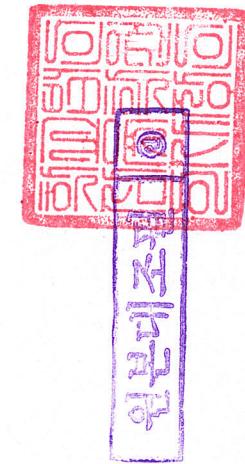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귀하-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 15조 제 4항 사학기 관제무·회계규칙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(삼육대학교)의 2013회계년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·자금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학교법인 삼육학원(삼육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 관제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(삼육대학교)의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(다음: 지적사항 있으며 나열 또는 별첨함)

2014년 4월 3일



감사 권 기 용
감사 조 승 교

회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재무실장
성명 이 선